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26. 3. 17.

제안자 : 재정경제기획위원장

수정이유 및 수정주요내용

개정안의 시행일인 2026년 1월 1일이 도과한 점을 고려하여 시행일을 공포한 날로 수정함(안 부칙 제1조).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부칙 제1조 중 “2026년 1월 1일”을 “공포한 날”로 한다.

수정안조문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공포한 날----------.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기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3751

발의연월일 : 2025. 10. 28.

발 의 자 : 최기상・안도걸・장종태
정태호・김영진・안호영
권칠승・천하람・이성윤
강준현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동수당법」에 따른 아동수당 지급 대상자가 8세 미만인 점을 고려하여 현행법은 자녀세액공제 대상 연령을 8세 이상으로 설정하여 중복 지원을 배제하고 있음.

그런데 정부는 「아동수당법」상 아동수당 지급 대상자의 연령을 2030년까지 13세 미만으로 매년 1세씩 단계적으로 인상할 계획이므로, 이에 맞추어 자녀세액공제 대상 연령을 13세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조정하여 중복을 배제할 필요가 있음.

이에 아동수당 지급 대상자 연령 인상에 따라 「소득세법」의 자녀세액공제 대상자의 나이를 인상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2).

법률 제 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8세”를 “13세”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녀세액공제 공제대상자녀 및 손자녀 나이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59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59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제대상자녀 및 손자녀의 나이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을 따른다.

1. 과세기간이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인 경우: 9세 이상
2. 과세기간이 2027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인 경우: 10세 이상

3. 과세기간이 2028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인 경우: 11세 이상
4. 과세기간이 2029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인 경우: 12세 이상

③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출생한 공제대상자녀 및 손자녀에 대해서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9조의2(자녀세액공제) 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입양자 및 위탁아동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공제대상자녀”라 한다) 및 손자녀로서 8세 이상의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1. ~ 3. (생 략) ② ~ ④ (생 략)	제59조의2(자녀세액공제) ① ----------13세----------. 1. ~ 3.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